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0회 임시회(2021. 9. 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**

의안 번호	21-72
----------	-------

2021. 9. 9.  
전문위원 신준호

**1. 제출경위**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건축과)
- 나. 제 출 일 : 2021. 8. 27.
- 다. 회 부 일 : 2021. 8. 31.

**2. 제출이유**

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이의신청 기간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과 다르게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‘이의신청 권리’를 제한하지 않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규정 삭제(안 제20조 제4항)
- 나. 재심의 처리 기한 및 결과 통보 의무 규정 삭제(안 제20조 제5항)

**4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
  - 1) 입법예고 : 2021. 5. 20.~ 6. 9.(의견 없음)
  - 2)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3) 규제개혁심의위원회 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

- 안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의 삭제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것임. ‘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’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한과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의 이의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
### 나. 종합의견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 ‘민원처리법’)은 주민의 적극적 의사표시를 통한 행정참여와 간편하게 행정구제 수단의 기능을 도모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.
- 하지만, 현행 조례에서는 ‘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’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신청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이의 신청의 기한 및 민원인의 통지 의무 사항 등의 절차 및 방법을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권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- 「민원처리법」에서 ‘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’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 우위의 원칙에 어긋나서 모순되는 상황임. 따라서, 해당 조항은 그동안 주민의 의사표시 및 행정구제 등의 기능이 과도한 제한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적법·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삭제하는 것이기에 그 타당성이 인정됨. 아울러,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공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상위법과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판단됨.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	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<p>제20조(심의절차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<b>1개월</b>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<b>15일 이내</b>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,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의의신청)</p> <p>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<b>60일</b>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행정기관의 장은 의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<b>10일 이내</b>에 그 의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<b>10일 이내</b>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

# [관 계 법 령]

##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

-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